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9
----------	-----

제출년월일 : '96. 11.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대전엑스포기념재단은 대전세계박람회의 성과를 계승·기념하고 첨단산업 및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동재단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시한이 '96년12월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9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하여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합 의 :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96.8.10일 내무부장관 허가

다.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

제5조(사업) ①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박람회 관련자산의 관리
2. 첨단산업·과학기술 및 산업기반기술의 전시·홍보사업
3. 미래사회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

2 (第57回 定期會 - 內務 第9次 別添)

4. 박람회기념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6. 제1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재단은 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2조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22조 (대전광역시 대전엑스포기념재단등에 대한 감면)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전엑스포기념재단 또는 대전세계박람회장에 있는 자원활용관, 전기에너지관, 정보통신관, 자연생명관 및 번영관을 건립하여 운영하는 법인이 대전엑스포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세계박람회장에서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으로서 그 사업(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사업을 포함하되, 공동이동산, 근도라, 도노래일 및 대식당등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u>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영위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u>)에 사용하는 부동산(취득일부터 5년이내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조례 제2424호)</p> <p>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u>다만, 제22조의 경우에는 199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u></p>	<p>제22조 (대전광역시대전엑스포기념재단등에 대한 감면) -----</p> <p style="text-align: right;">----- <u>통상산업부장관</u> -----</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조례 제2424호)</p> <p>제2조 (적용시한) -----</p> <p style="text-align: right;">----- (삭제) -----</p>